

“한 달 만에 야반 도주”...종적 감추는 외국인 노동자들

올해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4만2344명...전남 서부권 1266명 무단 이탈 신고 최근 3년 간 증가 추세에 검거도 200~400여 건

국내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전남 농·어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관계 기관이 무단 이탈 관리에 소극적인 사이 신고·검거 건수도 늘면서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단 이탈 신고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무단 이탈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44건으로 집계됐다가 이듬해 74건, 2019년 49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150건으로, 2021년엔 16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6건이 집계됐다.

검거 건수도 200~400건 대를 오가고 있다.

2017년 176건으로 집계된 검거 건수는 이듬해 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2019년 221건으로 부쩍 늘더니 2020년에 이르러선 442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2021년에는 247건이 집계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150건이 확인됐다.

실제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서 전북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모(46)씨는 최근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야반도주하는 피해를 겪었다.

2020년 3월 목포시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신청한 그는 지난 7월 중순께 이 남성을 고용했다.

그러나 전씨가 첫 월급을 준 지난달 14일이 남성은 종적을 감췄다.

그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11년 동안 20여 명 가까이 썼는데 모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달아났다”며 “일손이 필요해 외국인을 올때 겨자먹기로 뽑고 있지만 앞선해준 기관은 손을 놓고 있어 속이 썩는다”고 토로했다.

전씨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윤모(48)씨도 “고용복지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로에게 관련 신고를 떠넘기고 있다. 일손 부족도 문제지만 도망친 외국인 노동자가 타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이탈 신고가 빈번해도 기관의 후속 절차는 미흡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업장과 외국인을 연

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이탈을 ‘퇴사’에 포함시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 지역 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무단 이탈을 ‘어떠한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이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업장에 관련 대처가 가능한 기관을 연락해주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 자유권을 준다면 이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북안 광주이주민종합지원센터장은 “대체로 어렵고 힘들며 보수가 적은 일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입국 초기부터 일할 자유권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적합해보인다”며 “또 일정 기간 사업주에게 신분이 귀속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 전권을 도맡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국내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완화



하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 또는 사업장이 고용복지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인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분야 중·소 사업장에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사업장을 무단 이탈 할 경

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된다. 지난달 26일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올해 국내에 들어온 E-9 비자 취득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국에서 4만 2344명으로 집계됐다. 산단과 농·어촌이 많은 전남 서부권의 경우에는 올해에만 지난 7월 기준 누적 126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제도로 입국했다. 서선욱기자

“낚시배는 흡연 되나요”...16인 이상 금연구역 만취해 차량 10m 운전해 접촉사고 낸 혐의...무죄 받은 까닭은

법제처가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지자체·관련 종사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법제처가 복지부 요청으로 법령을 해석한 결과 낚시어선도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돼 금연구역에 해당됨이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했다.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 지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스

경찰 출동 당시 차량 기어 '주행' 상태

만취해 10m가량 차를 몰아 주차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5시55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 앞에서 약 10m 구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일행과 함께 차에 탑승했다. 그의 지인이 운전석에, A씨는 조수석에 앉았다.

2분 후 지인이 호출한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차에 접근했다가 돌아갔고, 이어 지

인도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혼자 남은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2시간이 지나 차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가량을 이동해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후 목격자가 차 안에 잠들어있는 A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5분 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A씨는 여전히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으며, 경찰이 차량에서 내리게 했을 때에도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경찰 출동 당시 차량의 기어는 'D(주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범의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무

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어가 주행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의의 (음주) 운전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비취볼 때 A씨가 의도적으로 기어아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차량이 이동할 때 A씨가 가속 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차량 앞에는 전방 차량이 주차돼 있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었다. 만약 A씨가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고자 했다면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작했을 텐데, 차량의 움직임은 이와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